

위임 업무 보고사항(제42조관련)

업무내용	보고 횟수	보고기일
1. 생태·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 지·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실적(법 제17조)	수시	사유발생시
2. 생태·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적(법 제19조)	연 1회	매년 종료 후 15일 이내
3.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실적(법 제66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)	연 2회	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
4.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·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(법 제46조 및 제48조)	연 2회	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
5.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실적(법 제42조)	지정 : 연 1회 해제 : 수시	매년 종료 후 15일 이내 해제 : 사유발생시